

# 의 정 정 보

2009 - 6

6. 10.

---

Ⅰ.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Ⅱ.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5
Ⅲ.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35
Ⅳ.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2
<부록> 행복한 책 읽기	64

---

##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의 수학여행비 지원	—	1
2. 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	2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및 서한문발송	—	4
4. 학교 체육부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의 중개	—	7
5. 국회의원의 관내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	8
6. 국회의원의 정책 설문조사	—	9
7. 시니어클럽에 국회의원의 세비 기부	—	11
8.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등	—	12
9. 당원협의회 중소기업지원특위 구성 등	—	13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 1 지방자치단체의 수학여행비 지원

#### 《질 의》

우리군(영월군)에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에게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수급자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효과를 고양시키고 학교에서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국민기초수급자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내용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 중·고생

- 예산소요액 : 7,500천원 (150명 x 50,000원)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학교로 지원

- 지원 내용

· 현재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수급자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80%지원

· 자치단체에서 20%지원예정

※ 중고생 수학여행비 100,000원 ~ 250,000원 소요

□ 업무처리 절차 : ① 영월군 관내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참가대상수급자 학생을 군에 통보 → ② 군에서는 수급자 학생 여행경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로 지원 → ③ 학교에서 자치단체로 정산보고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질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여행비를 기타 수급품으로 보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9. 4. 23. 영월군수 질의)

### 《답 변》

귀문의 수학여행비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5.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2 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 《질 의》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학생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연체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대학 및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학생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법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외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사 항》

1.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 도지사 박준영)에서 금융권으로부터의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가능 여부

※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을 위하여 재단 정관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2.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이 가능하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직무상 행위로서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을 받는지 여부

3.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이 불가하다면 상위법령 규정없이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생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2008. 11. 13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2호 사목에 의하여 4년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여 온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을 설)

귀문의 장학재단이 선거기간전에 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장학재단의 이사장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관련 조례와 정관등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동 재단의 설립·운영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2호 사목에 따라 4년을 충족한 이후부터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귀문과 같이 학자금 용자 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임.

2.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양지하기 바람.

3. 문 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귀문과 같이 학자금 융자 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는 같은 법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장학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관에 따라 학자금 융자알선 및 이차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위하여 귀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2009.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및 서한문발송

《질 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폐기물관리법 제4조)인 폐기물처리시설(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설치와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현 황

○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993 ~ 2010. 12.
- 부지면적 : 284,000㎡, 매립면적 : 113,500㎡, 주민편의시설 : 35,000㎡

○ 최근 진행사항

- 2008. 10. 23. : 대법원 판결.(승소)
- 2008. 12. 17. ~ 현재 :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 2009. 3. 31 : 에코랜드 재착공 및 행정 대집행 실시

□ 최근 진행상황

○ '09. 3. 31. 공사 재착공 및 행정 대집행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이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다시 매립장을 반대하려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으며, ○ 그간 매립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현장견학

- 목 적 :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지니고 매립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의 관련 시설(매립장 등)을 견학하여 친환경적인 매립장의 조성 등을 홍보하고자 함.
- 견학대상자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 견 학 지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장 및 소각잔재매립장) 등
- 추진일정 : 현장 견학 후 참가자에게 중식 제공
- 견학일시 : 1회(40명씩)/월, (5월, 6월, 9월, 10월)

□ 질 의 내 용

○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공원, 관공서 등의 설치에 선호하나 그에 상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각종 행위(집단행동, 소송, 물리적 방해 등)를 통하

여 사업추진을 방해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막대한 지장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식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신기술 및 환경방지시설 등을 견비한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우리시를 비롯한 타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소각잔재 매립장의 경우 약 18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매립장 반대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물리적인 공사방해 및 각종 소송 제기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갈등에 대한 유감표명과 현재까지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한 안심을 시키기 위한 차원의 시장 서한문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1.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국내 시설견학 여비 등을 편성하여 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시설이 아님) 주변지역 주민들의 선진시설 견학을 시행할 경우 선거법 저촉 여부?

- 질의 2.

: 상기의 자세한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과의 오랜 갈등 속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한 유감표명과 현재까지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주민설득 차원의 시장 서한문(1안, 2안 각각 검토요망-별첨) 배부 및 홈페이지(자유게시판-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2009. 4. 9. 남양주시장 질의)

## 《답 변》

### 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필요한 최소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한문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서한문을 발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09.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4 학교 체육부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의 중개

### 《질 의》

최근 초·중·고등학교 내 각종 엘리트체육의 스포츠부(배구부, 야구부, 축구부, 육상부 등)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 국회의원이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내에 있는 일선 학교(초·중·고)의 체육부와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독지가 등을 연결시켜 주고 일회성 또는 정기적으로 운동용품이나 후원금을 일선 학교 또는 체육부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9. 4. 24. 국회의원 신상진 질의)

## 《답 변》

귀문의 경우 기업체 등이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내 학교 등에 운동용품이나 후원금을 국회의원이나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하거나, 국회의원이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및 제257조에 위반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국회의원이나 기업체 등과 학교 등을 연결시켜 주거나 운동용품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009.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5 국회의원의 관내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 《질 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내 시립도서관에 본인이 소장 중인 헌 도서를 기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국회의원 본인이 소장 중인 도서를 기증하는 것임.
  - 지역구 관내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임.
  - 관련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 규칙 조항을 명기 바람.
2. 헌 도서 기증시 개별 도서에는 기증자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표기하지 않으며, 다만 도서관 관계자에게 도서 기증시 기증도서를 담은 박스 또는 포장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3호나목에 준하여 정당명, 국회의원명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도서기증 후 기증자인 국회의원이 기증받은 시립도서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기념촬영한 사진을 국회의원 본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의정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9. 5. 11. 국회의원 이한구 질의)

###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시립도서관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함. (2009.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6 국회의원의 정책 설문조사

### 《질 의》

인천시 북구청이 지난 2003년 부평구 일신동 일대 일신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유보되었고, 이에 따라 일신중학교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록 통학에 불편하지만 기존 전통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이 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신초등학교와 금마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2009년 5월 중 조진형 국회의원 명의로 「일신중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신초등학교 및 금마초등학교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선거법 관련 여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수는 일신초등학교 788명(30학급), 금마초등학교 405명(17학급)임. (2009. 5. 13.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 《답 변》

【 답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귀문과 같이 한정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9.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덧붙임】

## 국회의원의 정책 설문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인천시 북구청이 지난 2003년 부평구 일신동 일대 일신중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유보되었고, 이에 따라 일신중학교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록 통학에 불편하지만 기존 전통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이 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신초등학교와 금마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2009년 5월 중 조진형 국회의원 명의로 「일신중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신초등학교 및 금마초등학교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선거법 관련 여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수는 일신초등학교 788명(30학급), 금마초등학교 405명(17학급)임.

■ 「일신중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 일신중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 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일신동 ② 구산동 ③ 기 타

〈설문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설문 3〉 귀하께서는 몇 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설문 4〉 귀하의 자녀께서 다니는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 ) 초등학교 ( ) 학년, ( ) 초등학교 ( ) 학년,

( ) 초등학교 ( ) 학년 등

〈설문 5〉 일신중학교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과 자녀의 의견을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 ), 자 녀 ( )

① 부개 2·3동의 경우 5곳의 중학교가 있는데 반해 일신초등학교와 금마초등학교 인근에는 중학교가 단 1곳도 없는 만큼 일신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다소 멀지만 기존 전통의 명문 중학교에 배정받고 있으므로 일신중학교 설

립은 필요하지 않다.

③ 지역의 중학교 학생수가 매년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신중학교 설립은 필요하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되어야 한다.

〈설문 6〉 위 5번 문항에 대해 ①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만 연기되어야 한다)로 답하신 경우, 일신중학교 설립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10년 ② 2011년 ③ 2012년 ④ 2012년 이후

〈설문 7〉 일부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통학불편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중학교 부재에 따른 통학불편을 이유로 다른 지역 이주를 생각하시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인근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주하겠다.  
 ② 주변 전통있는 중학교로 통학이 가능하므로 통학불편을 이유로 한 이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을 비롯한 통학여건 개선 등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 8〉 일신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이주하겠다. ②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 9〉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중·고등학교 설립 ② 교사 증원 및 수준향상 ③ 학교시설 개선  
 ④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수준 개선 ⑤ 학부모 교육의식 변화 ⑥ 기타( )

(2009. 5. 13.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귀문과 같이 한정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9.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7 시니어클럽에 국회의원의 세비 기부

《질 의》

아래 기관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세비를 모금(당 차원)하여 “자유선진당 의원 일동”으로 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 예정기관 : 청주 수곡 시니어 클럽(노인 일자리 지원 위탁기관)
- 운영주체 :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 설립목적 : 경륜과 경험을 지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도모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함으로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
- ※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임(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지침). (2009. 5. 19.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질의)

### 《답 변》

귀문의 단체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모금하여 기부하는 것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009. 5.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8]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등

###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기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2008년도에 후원금 한도인 1억5천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 계좌로 2008년도에 2천만원, 2009년도에 나머지 1억3천만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질의합니다.

1. 이 경우 2009년도에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와 정치자금 계좌로 추가입금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2. 2009년도에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인 경우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모금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회보바랍니다.(2009. 5. 8. 국회의원 배영식 질의)

《답 변》

1. 모금한도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09년도에 연간(2009.1.1~12.31)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5천만원임.
2. 기부한도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후원회가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2009년도에 추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임. (2009.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당원협의회의 중소기업지원특위 구성 등

《질 의》

- 김성회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화성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음. 이에 한나라당 화성갑당원협의회 중소기업지원특위를 당원으로 구성하여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수여자를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2. 수여 인원의 제한이 있다면 몇 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것인지?
  3. 「별첨」과 같은 임명장 수여시 현행법상 저촉되는 바가 있는지?(2009. 5. 19. 국회의원 김성회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내부기구로 중소기업지원특위를 구성하고 임명권한이 있는 자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그 기구의 구성인원수나 운영양태 및 임명장 수여 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제89조제1항 또는 제93조제3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9.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5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6
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16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17
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	18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19
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1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22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3
10.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4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1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6
1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8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8
1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9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30
17.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	33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42호, 2009.05.08. 공포]

#### 1. 개정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중범 죄화됨에 따라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함(법 제2조제5호 및 제16조의2 신설).
- 나.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제5항 신설).
- 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법 제17조제1항제2호).
- 라.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법 제20조의2 신설).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47호, 2009.05.08. 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등록과 관련한 공무원의 조사를 건물의 소유자가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한편,

이 법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5만원 이하)가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규범력 있는 제재를 위하여 이를 상향조정(100만원 이하)하며,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③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52호, 2009.05.08. 공포]

### 1. 개정이유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함(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등 신설).
- 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법 제63조의2 신설).
- 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함(법 제63조의3 신설).
- 라.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방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53호, 2009.05.08. 공포]

### 1.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함(법 제6조제2항).
-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 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65호, 2009.05.08. 공포]

### 1. 개정이유

부상 등으로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여야 할 경우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도록 하며,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법 제7조제1항제1호).
- 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각종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법 제7조제6항).
- 라.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상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함(법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69호, 2009.05.13. 공포]

###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

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68조제2항 신설).
- 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제7항 신설).
-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의2제1항 신설).
-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천분의 1)을 적용함(법 제269조의2제3항 신설).
-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77조제3항 신설).

-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80조제6항 신설).
- 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법 제286조제4항 신설).
-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함(법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05.27. 공포]

###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 나.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잠산물 가공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94호, 2009.05.21. 공포]

###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법 제12조제2항).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88호, 2009.05.13. 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89호, 2009.05.13. 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90호, 2009.05.13. 공포]

### 1. 제정이유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9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 비축 및 공급신청(영 제4조 및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예정지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토지수급조사의 방법과 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토지수급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인구·산업 등 경제요인 및 개발가능지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토지에 대한 총량적 분석과 함께 지역별·계획별·용도별 등 부문별 토지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등(영 제17조 및 제18조)

한국토지공사는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등을 갖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함.

### 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개발용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와 관련하여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 청구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 기준을 따르도록 함.

### 마.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

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바.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를 해당 공익 사업시행자에게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급조절용 토지 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경쟁입찰,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와 공익목적 등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08호, 2009.05.28. 공포]

###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대상에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51호, 2009. 5.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 1)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 2)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긴급지원 요청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조의3 신설)

- 1)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 2)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치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교육지원의 지원범위 및 방법(영 제5조의2 신설)

- 1)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함.
- 2)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중·고등학교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영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2009.05.15. 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에 관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경사도 기준을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 2009.05.15. 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제도,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기관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424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05.21. 공포]

##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가 현상변경 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검토 의견의 반영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제47조)

신고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를 등록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나.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비기준의 구체화(별표 6)**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비기준을 신체·정신상 장애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와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98호, 2009.05.21. 공포]

**1.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 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 (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

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2009.05.22. 공포]

### 1. 개정이유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신체능력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신체활동 처방이 이루어져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678호, 2007.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체능력검사(제7조)

- 1) 신체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함.
- 2)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나. 신체능력검사 결과의 관리(제9조제4항 신설)

교육감은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체능력검사 결과 및 신체활동 처방을 조회하여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2.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8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6
----------	-----

제출년월일 : 2009년 4월 13일  
제출자 : 하지원 의원의외 11인

### 1. 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서울특별시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와 제6조).
- 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제2조,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2조, 제18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표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http://www.smc.seoul.kr>]

## □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18
----------	-----

발의연월일 : 2009. 5. 12.

발 의 자 : 성성경·천관상·김선길·전운애·박삼석·최형욱·  
구동화·권철우·허태준·김수용·김신락·전일수·  
김영욱·이산하·배문철·김태문·김영화·김종대·  
최대수·홍성률·이해동·전봉민·백선거·하선규·  
이영숙·김성우(26인)

### 1. 제안이유

- 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지의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도 날로 확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한 지역이나 구간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도심내의 변화가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권장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금연권장구역 내에서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곳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일정한 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자가 자율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어린이놀이터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버스 정류소
5. 도심 내의 변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제4조(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5호에 따른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관할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금연권장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권장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권장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금연권장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에서 금연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의 일정한 곳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권장의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경력인정 및 실비 지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군수가 금연권장구역이나 이와 유사한 구역을 지정한 곳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을 권장하고자 금연권장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홍보, 금연표지판 제작, 흡연장 설치, 금연권장구역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아래와 같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 2009년도 예산 : 21,400천원(금연권장구역 1개소당)

## 2.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21,400천원	
금연권장구역 대시민 홍보비	5,000천원	- 홍보리플렛 제작 1천원×3,000매=3,000천원 - 버스 등 매체활용 홍보 10천원×200대=2,000천원
금연권장구역 표지판 제작 및 설치	5,000천원	- 표지판 제작 500천원×10개=5,000천원
흡연장 설치비	6,000천원	- 흡연장 설치 3,000천원×2개소=6,000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5,400천원	- 자원봉사자활동비 연180일×1명×30천원 =5,400천원 * 06년 명예금연홍보단활동비 기준

[부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busan.kr>]

##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안전하고 편리해진 통합 민원서류발급 서비스 개시	——	42
2. 전국에서 「내 고장 역사 찾기」 6월부터 착수	——	43
3.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확대	——	45
4. 불편·부담 주는 민원,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	47
5. 2009년 국가DB구축 26개 추가사업 발주	——	50
6. 홀로 사는 어르신, u-Care로 정부가 모신다	——	51
7. 저소득층 25만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추진	——	52
8. 정부청사,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적극전개	——	53
9.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산업의 토양구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55
10.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56
11. 자치단체 우편관리체계 획기적 개선으로 예산절감	——	60
12. 국가기록원 '어린이를 위한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61
13.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	——	63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 ① 안전하고 편리해진 통합 민원서류발급 서비스 개시

- 행안부, 민원처리용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

-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은 기능이 간편하게 전자화되어 보다 편리해진 통합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그동안 시군구 민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온 민원서류발급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민원서류 발급 기능상의 보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능을 대폭 간소화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민원창구 한곳에서 여러 형태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로서 그 편리성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수가 사용되어 왔으나
  - 민원서류 발급시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에 따른 빈번한 장애발생과 민원서류내용 스캔방식으로 인한 보안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 '05년 마포구청에서 개발, '08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약 1800여대 도입(대당 약 800만원)
- 행정안전부는 이번 표준규격 제정을 통해 발급기의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발급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스템(새울 등)과 발급기의 담당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발급기의 호환성 및 범용성이 확보됨으로써 사용기관에서는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활용한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표준규격 제정 이전에 보급된 장비도 추가 비용부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② 전국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6월부터 착수

－ 역대 단체장, 4H·새마을, 선거·행사기록 등 발굴·수집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등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6월부터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이 총괄 하며, 전국의 지자체별 기록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지자체별 역대단체장 기록, 6~70년대의 4H나 새마을운동 기록 등 역사 연혁에 관한 기록물의 발굴·수집부터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수집 기록물은 표준 목록관리 S/W에 입력하여 전국의 지방 기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의 미취업자 약 10명을 선발하여 작업반을 편성했으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연인원 약 30만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19일 오후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서울,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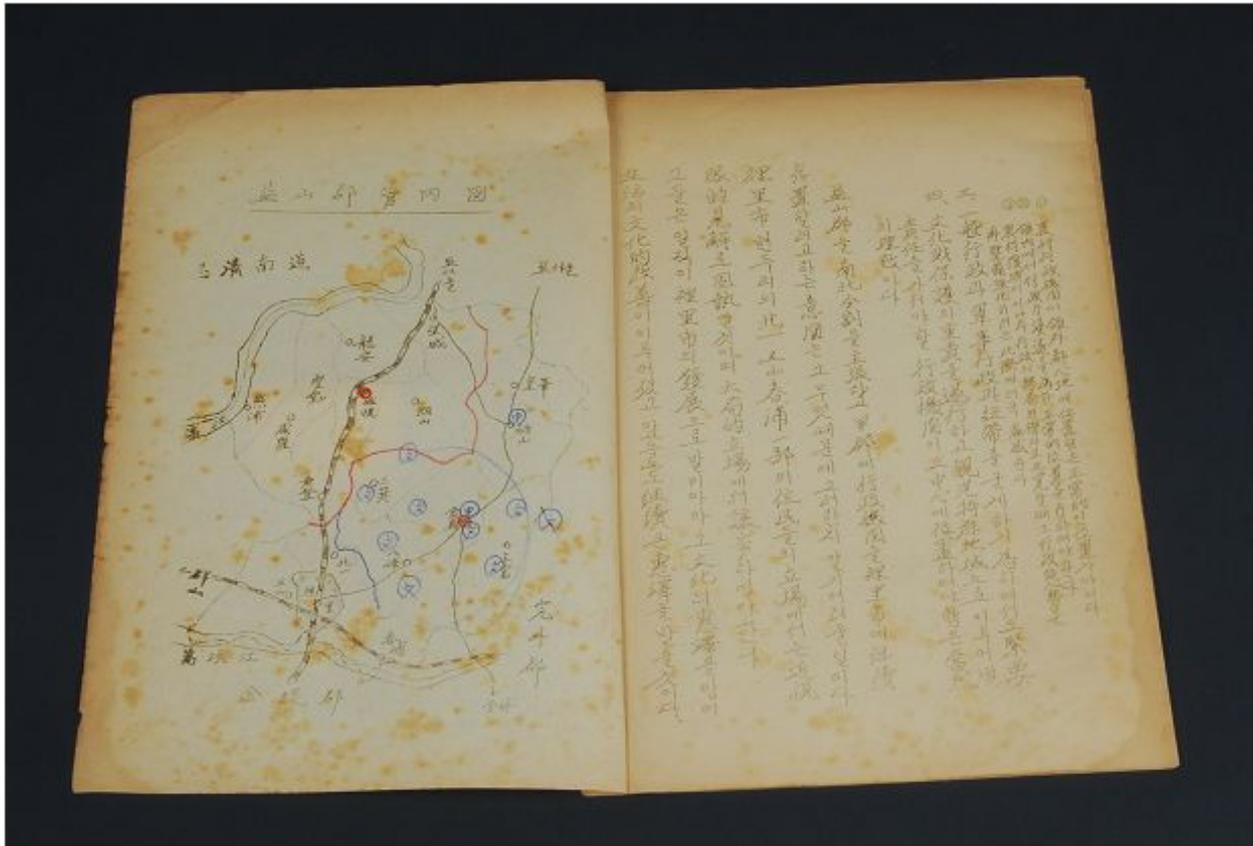
장원, 제주권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5월 20일에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충청, 호남, 영남권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각 지방의 개인, 문중, 학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 등에는 내고장 역사규명에 필요한 많은 기록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울산광역시, 제주도, 파주시, 시흥시, 구리시 등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그간 국가기록원은 국가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왔으며(사례 별첨 참조),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지자체별 역사연혁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록물 1 : 전남 여천군 화양면 민의원 선거인 명부(1958년)>



< 기록물 2 : 전북 익산군 분군에 대한 의견(연대미상) >



**③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확대**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 발표 -

- 앞으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Internet Explorer(IE)이외의 브라우저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선 금번 추경사업을 시작으로 ‘11년까지 약 150개 기존 전자정부 대민사이트에 대해 브라우저 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을 실시한다.

- 금년 추경 사업의 경우, 115억원이 투입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나라장터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49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세부내용 : 참고 1)
- 행정안전부는 추경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이 직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7개 분야로 사업을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등 상용 SW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10년까지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웹표준 준수를 유도하고, '11년부터는 신규 대민사이트 구축 시 웹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11년부터 행정기관은 신규사이트 구축 시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웹 표준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정보화 사업 전반에 조기 확산되도록 교육 등 기반조성 분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1년까지 행정기관 발주 담당자 및 SI사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웹 표준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웹 표준 교육 시 구직자는 교육비 전액, 재직자는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관련예산 : 5억원)
  -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을 6월까지 개정하고, 웹 개발자가 실제 개발환경에서 웹표준 준수지침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세부내용 : 참고 2)
- 그동안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특정회사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민

단체의 소송 등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웹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상당 기여하게 되었으며,
- 아울러 재외국민의 정부사이트 정보접근 향상 및 전자정부 수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④ 불편·부담 주는 민원,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 행안부, 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건축사협회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제도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자영업자·기업 등 행정의 실수요자가 영업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발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건축사협회, 여성장애인협회, 인헌시장(관악구 봉천동),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는 주요 민원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그동안 지상변압기·개폐기 등은 도로법에 의거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에 변전소 등의 전기통신시설물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상변압기·개폐기 등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식품접객업과 관련한 제1·2종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도 임의로 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제1종 근린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등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일반음식점, 기원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임의변경이 가능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노래연습장 및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고가장비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소요되는 배터리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비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수리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으나
  - 보장구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고가장비인 전동 휠체어·스쿠터의 배터리 구입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

향후 장애인이 운용비용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개선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①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존치부담금 감면을 확대와 ②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민간부담을 완화는 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중이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산업시설에 존치부담금 감면을 확대>**

▫ 향후 2년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존치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을 현재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75% 감면으로 확대하고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납부(약 70% 감면효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업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민간부담을 완화>**

▫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와 관련하여 민간부담률(개정전 10%)은 영세상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이 불가하거나 지연 등의 문제발생 하였으나

▫ '09년 교부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09.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에 따라 민간 부담률의 50%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

※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담 : (현행) 정부60%, 지자체30%, 민간10% → (개선) 정부60%, 지자체35%, 민간5%

※ 금년도 현대화 사업 : 124개, 예산 558억 민간자부담(55억 → 27.5억)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살살이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5 2009년 국가DB구축 26개 추가사업 발주

- 300억 투입으로 4,000여개 일자리 창출 예상-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 2월 본예산을 통한 23개 국가 DB 구축사업 발주(329억원)에 이어, 추경예산을 통해 26개 국가DB사업(300억)을 추가 발주한다.
- 국가DB구축사업은 매년 1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IT분야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8년 IMF 위기 및 '05년 에도 추경사업에 반영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IT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추경사업 반영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추경예산 확보 즉시 사업발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수요조사 실시, DB 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심의와 대상사업 선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 금번에 발주하는 사업으로는 국적관련문서, 산림종자공급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DB 등 행정기관의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행정 DB 구축분야 8개 사업과, 천문현상정보, 조위관측기록지 등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지식DB 분야 18개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는 희망 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5.18일 오후3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지하1층 회의실)에서 관련 IT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본 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 예산 집행에 따라 금년도 국가DB 구축사업으로 총 9,000여명의 IT 분야 고용창출(추경예산 : 4,000명)이 예상된다. 또한 민원서류 등의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공공기관의 주요 지식정보자원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⑥ 홀로 사는 어르신, u-Care로 정부가 모신다

- 올해 9,000여 독거노인에게 u-Care 서비스 제공 -

- 전북 순창에 사는 양모 할머니(73세)는 지난 2월 가스 불에 찌개를 올려놓은 걸 깜박 잊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할 뻔 했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설치해 준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에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의 u-공공서비스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사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독거노인 u-Care 서비스」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스누출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응급상황 시 소방대원이 긴급출동·구조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이다.
  -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지병으로 쓰러져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대비, 집안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보다 부족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전화 확인 또는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역, 5,550여 어르신에게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응급구조를 받은 어르신은 61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본인이 응급호출을 한 경우지만, 화재의 사전 자동감지 및 조치를 통해 큰 사고를 막은 경우도 35건이나 된다.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자, 올해 총 43억원(정부지원금 17억원, 지자체 부담금 26억원)을 투입하여 서산시(충남), 문경시(경북), 김제시(전북), 광양시(전남), 삼척시(강원), 동해시(강원) 등 6개 지역, 9천명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경제력을 갖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민간 기업이 u-Care 서비스를 결합한 복지형 민간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7] 저소득층 25만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추진

- 5월 11일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참여자 모집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5월 11일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 (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 ※ 사업비 17,070억원: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사업 참여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고 재산이 1.35억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상의 실직자, 휴·폐업자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선발기준표에 의해 순위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학교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전국공통 20개 생산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130여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강병규 제2차관을 총괄책임관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246개 지자체도 희망근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 또한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차관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행안부 실·국장을 시도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5월 11일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석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근로사업은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행안부와 지자체의 행·재정력을 총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⑧ 정부청사,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적극전개

– 부채나눔 행사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크게 높여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월 22일 오전 07:30분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고객과 입주부처 공무원을 대상으

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운동에 공무원들의 솔선·동참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즉,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확산시킴으로서 우리사회에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취지로 실시되며, 정부중앙청사 등 6개청사가 동시에 실시한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 에너지절약 홍보물로 “부채”를 방문객이나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방법과 친환경·고효율에너지자재 사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오는 5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복장자율화 지침”에 따라 노타이, 노자켓 차림의 복장간소화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여름철 냉방에너지절감을 위해 사무실 적정온도유지(평균 27℃ 이상), 저효율등을 고효율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CO<sub>2</sub>)저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등에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설치하고 친환경 기술도입 등 에너지효율화방안을 더욱 내실화하여 에너지절약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9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산업의 토양구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전국적 범위의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희망근로사업은 25만개의 일자리창출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 전국단위의 4대 랜드마크사업, 시도 대표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특히, 4대 랜드마크 사업은 한반도 생태축인 ①「백두대간 보호사업」,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②「동네마당 조성사업」, ③「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④「자전거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 전국적 범위에 걸쳐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조기에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 4대 랜드마크 사업에는 총 977억원의 사업비와 1일 10,400명, 연인원 128만명이 된다.
- 4대 랜드마크사업은
  - 먼저,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 684km에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등반·생태통로 정비,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 예방,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 백두대간 보호에 나선다.
  -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전국 88개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개소당 5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녹지, 야외쉼터, 주차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희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4개 시도(26개 시군구) 28개 지역에서 지역 당 6억원을 투입하여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로 등의 확·포장을 실시한다.
-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방치자전거 수거정비, 자전거 거치대 정비 등을 위한 「자전거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전거 보유대수, 교통수단을 등 기본통계 작성에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12개 지역)도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인 대표사업을 1~2개씩 선정 추진키로 하였다.
- 우수 사업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편, 희망근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한석규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랜드마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대표적인 생산적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 10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골프회원권·골동품 등 압류·공매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 오는 6월을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1~6.30), 하반기(11.1~12.30)

-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9.3.1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억원)

연 도 별	2006.3.1	2007.3.1	2008.3.1	2009.3.1
체납총액(계)	3조2,013	3조2,634	3조2,134	3조4,096
현 년 도	1조1,219	1조1,986	1조2,266	1조4,320
과 년 도	2조794	2조648	1조9,868	1조9,776

-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09년 지방세수 전망치인 42조 2,675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세목 납세안내 강화, 이메일,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기예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골동품 공매, 체납액 징수**
  -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의 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09년에는 이월체납액 3조 4,096억원의 20%인 6,820억원(2008년도에는 체납액의 18.4%인 5,904억원 징수)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

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 먼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지적전산망), 예금(금융기관 본점), 직장(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조회 등을 통해 소유 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며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 등도 압류, 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 (일명) 대포차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포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 >

(단위:억원, 천대)

구 분	체납건수 별 현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이상	
체납금액	1,626	1,040	767	712	2,508	1,658	8,311
차량대수	1,685	514	264	194	403	131	3,191

-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5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속칭 대포차)을 중점 관리하며,

- 지방세 체납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발취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자진하여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에 주력
- 아울러, 고질·상습체납자는 조세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 신용불량자 중 체납세 일부 납부, 분납계획서 제출 등 납부의지 확인 후 신용불량 해제 조치를 통한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며,
  -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자 중 사업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기준 마련, 사업·분납계획서 등을 검토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II 자치단체 우편관리체계 획기적 개선으로 예산절감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MOU 체결로 세금고지서 등 배달결과 확인 빨라진다 -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국 우체국간 우편물류정보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모아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확산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편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금고지서 등 배달결과 확인이 빨라지고 예산도 크게 절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번 지식경제부와 양해각서 체결로,
  - 국민은 기한내 세금고지서를 빨리 받아 볼 수 있어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등기민원 처리(접수·확인)시간이 10초이내로 단축(20~30분 → 5~10초) 되는 등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자치단체도 업무경감은 물론, 국민의 세금고지서, 민원서류 등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확인이 빨라(배달후 1~3일 → 1시간 이내)지고,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단축(10~15일 → 2일)되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88개 자치단체의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반송수수료와 업무개선효과로 11억원 절감과 시스템 개발·구축비 등에 140억원 등 151억원 상당의 경비절감과 2%의 요금할인혜택 등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 우리나라는 연간 약 890만명이 주소이전을 하고 있어 등기반송률이 약 3% 발생, 230개 자치단체로 보급 확산시 반송수수료가 건당 1,500원으로, 반송률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의 우편반송료 절감이 기대됨
  -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우편배달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우편 및 세무업무 등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개선에 협력하고, 우체국에서도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키로 하였다.

- 전국 자치단체와 우체국간 우편물류정보 연계서비스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 와 지식경제부(‘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MOU 체결사진 추후 별송)

※ ‘우편모아시스템’ 이란?

행정기관 내 모든 우편물을 통합관리하고 등기우편 배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기도 양주시가 개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기능개선과 표준화 과정을 거쳐 ‘09.2월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보급·확산중인 시스템 임

**12** 국가기록원, '어린이를 위한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조선시대 UFO출현, 임진왜란 흑인병사 등 재미난 기록 소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박상덕)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기록 문화의 우수성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5월 26일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하여 서비스 한다.
- 콘텐츠 내용 중에는 《UFO의 출현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 “흑인병사”가 있었다》 《“코끼리 기르기”는 너무 힘들다》 등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록들을 많이 소개했다.
-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은 ①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 ②조선왕조실록이란? ③실록은 어떻게 만들고, 관리했을까요? ④조선왕조실록 공부방 등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메뉴에서는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기록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 두 번째 메뉴에서는 조선시대 왕 옆에서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관’과 이로 인해 탄생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 다음 세 번째 메뉴에서는 실록의 편찬 과정 및 보관방법·관리에 대해 서비스하며, 마지막 메뉴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재미있는 내용과 어린이 과거시험 및 용어사전이 제공된다.
- 특히 마지막 메뉴의 어린이 과거시험에서는 사이트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며,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문제를 맞힌 어린이를 대상으로 mp3 플레이어·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만들고 관리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더불어 재미있는 내용을 가미하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기획하였다.
-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더 많은 이용자들의 기록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강·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 ※ 조선왕조실록-조선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년)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이며, 1893권 888책으로 구성. 조선시대의 국가정책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997년 9월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 됨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 13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멕시코, 미국(남부캘리포니아, 텍사스, 켄사스 등)에서 돼지인플루엔자(A/H1N1)의 사람간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됨에 따라, 4월 27일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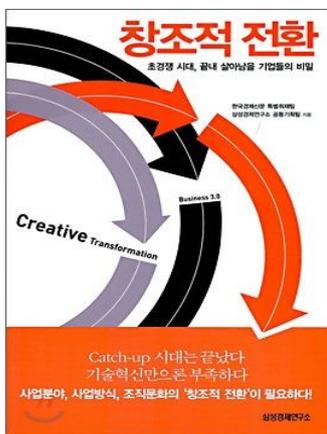
- 이번 지침은 보건요원 지침, 일반국민 지침, 의료기관 지침, 실험실 진단 지침, 해외여행자 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 시·도, 13개 국립검역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지침은 외국의 발생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일 “16개 시·도 보건과장 및 13개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돼지인플루엔자 검역강화 및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창조적 전환**  
**저자명 : 한국경제신문특별취재팀**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 : 2008년**  
**페이지 : 232**  
**가 격 : 12,000원**

이 책은 구글과 애플 등 ‘창조와 상상력’으로 경영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고 있는 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3.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곧 고효율성을 최고의 경영 가치로 추구해온 비즈니스 2.0 시대의 전략만으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음을, 나아가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3.0 시대, 한국기업들을 위한 생존 키워드로 ‘창조적 전환(Creative Transformation)’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3대 축인 사업분야, 사업방식, 조직문화 차원에서 이러한 ‘창조적 전환’을 통해 남과 다른 가치를 창조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데 성공한 선진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 그 비법을 10개의 실행어로 구체화해 들려준다.

## **‘분업과 표준’에서 ‘진보와 혁신’을 거쳐 ‘창조와 혁명’의 시대로!**

과학적 관리법과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분업과 표준’의 비즈니스 1.0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벤치마킹,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6시그마 등 다양한 경영전략으로 무장한 ‘진보와 혁신’의 비즈니스 2.0 시대를 이끌어온 성장 엔진도 이제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낡은 엔진은 아무리 뜨겁게 달구어도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비즈니스 2.0 시대의 성공에 안주한 채 점진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어느 순간 새 엔진을 갈아 끼울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급변하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창조와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구석구석을 쥐어짜 회사를 고효율의 기계로 만드는 시대는 가고,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이 경영의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바로 비즈니스 3.0 시대다.

### **비즈니스 3.0 시대, 한국기업들에게 전하는 생존 비법 ‘창조적 전환’**

이 책은 한국 기업들이 차츰차츰 데워지는 냄비 안에서 뛰쳐나올 기회를 놓치고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변환, 즉 ‘창조적 전환(Creative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규모와 효율성에 매달리며 따라잡기(catch-up) 전략만을 구사해서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올해 초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며 한국경제신문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연재한 “비즈 3.0 이젠 창조적 전환이다”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요컨대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창조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이때 한국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창조적 전환에 성공한 선진기업들을 찾아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문화책임자(CCO), 실무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전하는 비즈니스 3.0 시대의 생존 비법을 분석해 구체적인 실행어로 들려준다.

## 선진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에서 전하는, '창조적 전환'을 위한 실행어

이 책에는 창조적 전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거실을 잡는 기업이 시장을 잡을 것임을 내다보고 PS3를 단순한 게임기를 넘어 홈 네트워크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소니나 PC 업계의 최강자에서 정보기술 종합서비스 업체로 변신한 IBM의 사례는 기존의 사업을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지멘스나 스피노프 방식으로 군사기술 상용화한 SRI 인터내셔널의 사례는 빅 사이언스(Big Science)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상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조적 혁신의 키워드를 10가지 실행어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01 기존 사업을 재해석하라
- 02 빅 사이언스를 상업화하라
- 03 미개척 유망 분야를 발굴하라
- 04 새로운 엘도라도, 신흥 시장을 공략하라
- 05 이젠 R&D에서 한발 나가 C&D로 승부하라
- 06 감성에 호소하라
- 07 글로벌 M&A로 눈을 돌려라
- 08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인정하라
- 09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유문화를 만들어라
- 10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라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